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 출 일 자 : 1995. 10. 1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○그간 연구·기술분야 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,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계약 채용하여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던 바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음.

2. 주요골자

○구본청 총정원(1,004명→1,008명)

○직속기관(보건소) (74명→80명)

3. 개정근거

○시정 12200-625('95. 9. 4) : 지방 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승인

○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 본 청 : 1,008명

3. 직속기관 : 80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구 본 청 : 1,004명 2. (생략) 3. 직속기관 : 74명 4. (생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1. 구 본 청 : 1,008명 2. (현행과 같음) 3. 직속기관 : 80명 4. (현행과 같음)